

서울특별시
시민권법

시민 127-14(4)

77. 12. 22

수신 주신자 관료 산업과장

기록 전부 공문 서류를 준수 하시

1. 경주 공문 서류에 제26조(결재) 제1항에 의하면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니

2. 동 제27조(전결, 대결, 후결): 제3항에 의하면 "결재
권자가 결재를, 그 기관, 기관의 사무로 판단한 기관 부서장이
아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결할 수 있으므로"라고 규정
되어 있고

3. 또한 대결은 관계부서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4. 각급 기관에서는 이를 준수 하기 아니하고 대결권
이 있는 보조 기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5. 앞으로 위와 같은 기안문서는 문서통제가 불가능한
만 아니타 규정을 위반하는 관계자에 대여는 문책하겠으마

6. 각급 기관의 문서통제관은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 준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안문서의 투체에 철저를
기할 것

7. 관계규정

가. 경주 공문 서류(대통령령 제13호)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8568호)



시민 127-1464

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대로 61-15번지 8329호)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대로 61-15번지 8329호)

첨부 전부 대체금액 확인
•

9.12.23.

13. 30

2632

A4

서 울 별 일 시 장

수신처 서관 3, 서과 2-5, 별관 1-6, 서구 1-12,

서울 1-2, 서사 1-69, 서국 7

제 9 토 티 현황

구 분	위 고	대 티	근 거
부 청	시 장	1부 시장	규칙 제3조 1항 전 단
	시장(부)·부시장	2부 시장	동 상
	1부 시장	2부 시장	규칙 제3조 2항
	2부 시장	2부 시장	동 상
	1·2부 시장	기획 관리관 (이·국·준·위) 국장	규칙 제3조 2항 1호
국 장 (관)	주무과장	규칙 제3조 2항 2, 3호	
	· (고·준·위)		
	담당관	동 상	
	(담당관 있는 곳)		
	실·과장	주무과장 (국·준·위)	규칙 제3조 2항 4호
	계장	계원·증상·위주·구역	규칙 제3조 2항 5호
구 청· 출장소	구 청장	상위순위국장	구 청계 제5조
	소 장	상위순위과장	규칙 제3조 1항 1호
사업소	소 장	담당관 부	규칙 제3조 1항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고)

1. 구청, 출장소 및 사업소의 조조기관

유고기는 각 부서별 구청 출장소에 준비

2. 지청 대회

- 별경 대회가 있는 경우 -

가. 기관장 유보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거
시각의 대회

나. 조조기관 유고시 소속 기관장이 전국 및
직류 순위에 의거 시각

근
거
법
령

=====

1.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568호 1977. 5. 11)

서울특별시의 구직제(대통령령 제8229호

1976. 12. 31)

2. 조례(창고)

서울특별시 기자체본부 설치조례(조례제1103호

1976. 12. 31)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설치조례(조례제1117호

1976. 12. 31)

3.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규칙 제1623호

1976. 12. 31)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부 규칙(규칙제1666호

1977. 1. 28)